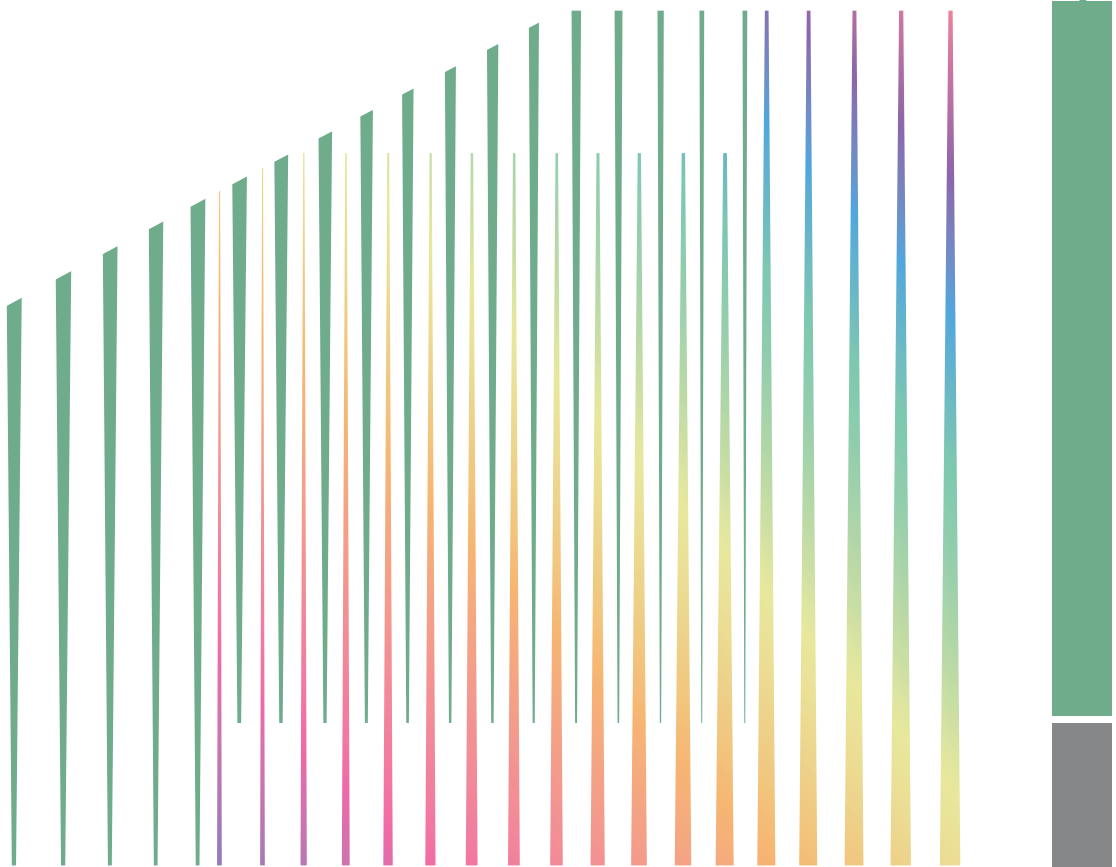


수시연구과제 2021-12

# 사회 안전을 위한 수출입 통제제도 연구

정재호



# 사회 안전을 위한 수출입 통제제도 연구

2021. 12.

정재호



# 서 언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 행정의 목적이 관세 징수에서 점차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통관 과정에서 사회 안전과 국경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법령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부처별로 통제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통제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통제제도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종 수출입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의 수출입 통제제도와 협업체도를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춘 정책적 의도를 감안하여 사회 안전과 위험관리가 균형을 맞추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서원대학교 김재식 교수,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관세청 성용욱 서기관, 그리고 익명의 심사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통계자료 정리와 분석을 맡아 준 본 연구원의 김학효 선임연구원과 원고교정을 맡아 준 연구출판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세 행정의 역할이 과세 행정에서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회 안전에는 국민 건강, 보건, 그리고 환경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GATT/WTO 체제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 근래 들어 빠르게 확산되는 FTA로 인해 관세 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한 것도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사회 안전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 이외에 다른 승인, 허가 등의 이유로 수출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안전, 국민 보건, 환경 보호 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치이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은 WTO에서도 승인되어 수행할 수 있다.

수입품의 통제는 자국 영토로 해외 생산품이 들어와서 소비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내 법령으로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출입 허가 혹은 승인 요건을 제시하면서 수출입 물품의 통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품 통제는 개별 부처별로 소관 물품에 대한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입승인 요건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감안할 점이 있다. 앞서 사회 안전을 정의할 때 언급하였듯이, 현재 산업적 과잉생산 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적절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다시 말해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자유가 희생되는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과도한 안전관리는 시행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건강, 보건, 그리고 환경 이슈 등을 포괄하는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자유가 희생되는 과도한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GATT/WTO 체제에서 진행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 FTA 확산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위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희생되는 자유와 위험과 공존하는 안전의 정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위험을 관리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의 다양한 수출입 통제제도를 통합해서 고시하고 있다. 개별 부처가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만 규정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서 이를 통합한 「통합공고」를 통해 관련된 제도들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별로 그리고 개별 법령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출입 통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공고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통제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대외무역법」을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 아니어서 통제제도 자체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대외무역법」 제 12조에 의해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신규로 지정하기를 원할 때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혼용 여부, 기존 무역관행과의 배치 여부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 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여부,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여 수출입요령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입물품 통제제도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른 소관 부처의 수입물품 통제제도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수입물품 통제제

---

1) 별도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요령 등을 정리해서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도는 소관 부처의 권한이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여러 부처의 권한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통합공고」는 대표적인 수입 규제제도이지만, 그동안 「통합공고」를 통해 규제되는 수입품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앞서도 보았듯이,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통계통합 품목 분류표상의 HS 10자리는 1만 2,243개(2012년 기준)에서 1만 2,232개(2017년) 정도이다. 전체 품목 숫자는 1만 2,200여개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변화가 없지만,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2008년에는 6,226개에서 2021년에는 8,123개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HS 10자리 기준)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통제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공고」에서 규제되는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 증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는 않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8,123개로 전체 HS 10자리 총 1만 2,242개의 66.4%에 해당한다.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절반 이상의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통합공고」에서 언급하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입규제를 모두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통합공고」 이외에도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도 수입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에 수입실적이 있는 HS 10자리 품목이 1만 1,135개 중에서 6,907개가 통합공고에서 규정된 품목들이었다. 다만, 「통합공고」에서 규정된 품목들의 HS 10자리가 현재 사용 중인 HS2017 기준이 아닌 HS2012로 고시되어 있어서 더 많은 품목이 실제 수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통합공고」의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S 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는 새롭게 HS2022가 사용되는데, 여전히 HS2012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수입요령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적용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수입요령 등이 규정된 품목 중에서도 통관 전에 그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관장 확인 고시」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HS 10자리 기준으로 4,931개로 전체 HS 10자리 기준으로 40.3%에 해당한다. 이 품목들이 모두 「통합공고」에 있는 품목은 아니다 「통합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세관장 확인 대상인 물품이 283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관장 확인 고시」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HS 10자리 기준으로 4,931개이며, 전체 HS 10자리 기준으로 40.3%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HS 10자리 기준 4,931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관장 확인사항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 것으로, 막상 「세관장 확인 고시」에는 구비 요건이 HS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비요건이 HS코드별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세관과 수입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 물품이 아닌 경우에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장 확인은 통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인데,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입업자가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법령별로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다양한 규제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수입 승인요건을 확인하는 것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결국 통관은 세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입 승인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협업의 중요성은 앞서 보았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세관에서는 「관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2014년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평택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 부산 협업사무소가 협업검사센터로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협업검사 건수도 2016년 2,859건에서 2020년에는 5,495건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개인 소액물품인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협업검사가 이루어지면서 협업검사 건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개별 부처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정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서 협업검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협업은 세관직원과 세관직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해당 수입품의 소관 부처가 함께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협업검사센터의 역할은 확대되고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수입규제 사항들은 기업형 대규모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요즘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들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승인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규모의 기업형 수입물품과, 소규모이고 소액인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규모 기업형 수입물품의 입장에서는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과 차이를 두는 것도 차별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도 개인이 직접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다양한 쇼핑몰에 있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쇼핑몰형)을 통해 해외직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매대행업자와 기업형 수입업자의 동일한 수입품이 다른 수입 규제를 받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차별로 인해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를 통해 다수의 국가들과 관세장벽 없이 혹은 낮은 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수입이 전체 우리나라 수입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무역장벽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수많은 수입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공고」에서 규제하는 수입품이 전체 수입물품의 66.4%이고, 「통합공고」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을 통해 수입 규제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세관장 확인 고시」 등에도 수입 규제제도가 다수 존재하여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들은 전체 수입물품의 70~8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수입규제들이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를 희생하면서 사회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체 수입물품 중 수입 규제가 없는 품목이 20~30%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수입품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직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기업형 수입품과 개인 자가소

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할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춘 정책적 의도를 감안해서 사회 안전과 위험관리가 균형을 맞추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부처별로 운영하는 소관 수입규제는 몇 개 안 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정부 부처로 확산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의 〈단일창구계획〉, 호주의 〈무역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계획〉 등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 안전과 위험관리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장에 의해 확인되어 통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개별 부처들과의 협업검사도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협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망과 공중보건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및 단일화된 법령(고시, 공고 포함)을 통해 신속한 통관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목 차

I. 서론	1
II. 국내 수출입 통제제도	5
1. 수출입 승인 및 요건 확인	5
가. 「대외무역법」 수출입의 제한(수출입공고)	6
나. 「대외무역법」 수출입 요건 확인(통합공고)	9
다. 「관세법」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17
라.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비교	21
마. 「통합공고」 품목 수 변천	24
2. 수입품 안전성 검사제도	27
가. 수입품 안전성 검사	27
나. 협업검사	29
III. 주요국의 수입품 통제 및 협업제도	34
1. 수입품 통제제도	34
가. 미국	34
나. EU	41
다. 일본	44
2. 수입품 검사 관련 협업제도	47
가. 미국	47
나. EU	48
다. 호주	51
3. 소결	53
IV. 결론	55
참고문헌	61

## 표목차

〈표 II-1〉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6
〈표 II-2〉 「수출입공고」 제6조(수입제한품목)의 주요 품목 .....	7
〈표 II-3〉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수입승인 절차 .....	8
〈표 II-4〉 「수출입공고」 제4조 수출 금지 품목 .....	8
〈표 II-5〉 「수출입공고」 제5조(수출제한품목)의 주요 품목 .....	9
〈표 II-6〉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	9
〈표 II-7〉 「통합공고」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10
〈표 II-8〉 「통합공고」 제3조(적용 법령등) .....	10
〈표 II-9〉 「통합공고」 제3조에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법령 .....	11
〈표 II-10〉 「통합공고」 제8조의 별도규정 품목 .....	12
〈표 II-11〉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입요령 .....	13
〈표 II-12〉 「통합공고」 제8조(별도규정 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입요령 .....	15
〈표 II-13〉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출요령 .....	15
〈표 II-14〉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18
〈표 II-1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의 대상 법령 .....	19
〈표 II-16〉 세관장확인대상 주요 수입물품 및 구비요건 .....	19
〈표 II-17〉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및 구비요건 .....	20
〈표 II-18〉 「통합공고」 제3조와 「세관장 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	22
〈표 II-19〉 「통합공고」 [별표 2]와 「세관장 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	22
〈표 II-20〉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대상 물품 .....	23
〈표 II-21〉 「세관장 확인 고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	24
〈표 II-22〉 「통합공고」 대상 품목 수 변화 .....	25
〈표 II-23〉 2019년 3월 28일 「통합공고」의 삭제된 품목 .....	27
〈표 II-24〉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	28
〈표 II-25〉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28

〈표 II-26〉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29
〈표 II-27〉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	30
〈표 II-28〉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	30
〈표 II-29〉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안전성 검사) .....	31
〈표 II-30〉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	32
〈표 II-31〉 협업검사센터 설치 및 운영 경과 .....	33
〈표 II-32〉 협업검사 현황 .....	33
〈표 III-1〉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기준 .....	35
〈표 III-2〉 FDA 화장품 제조시설 현장 검증 사례 .....	38
〈표 III-3〉 EU 식품 등의 수입 및 유통에 관한 일반원칙 주요 내용 .....	41
〈표 III-4〉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적용 대상 .....	42
〈표 III-5〉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	42
〈표 III-6〉 미국 농산물 검역 합동 T/F의 주요 실행 계획 .....	47

## 그림목차

[그림 Ⅲ-1] 농무부의 육포 수입 검역 시 위험 평가 양식 .....	35
[그림 Ⅲ-2] 방사능 성능 표준 준수 여부 신고(Form FDA 2877) .....	36
[그림 Ⅲ-3] EU 화학물질 등록 화면 .....	44
[그림 Ⅲ-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단일 창구 정보 교환 흐름 .....	49
[그림 Ⅲ-5] 물품 통관 간소화 과정 .....	50

---

# I. 서론

---

전 세계적으로 관세 행정에서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 행정은 과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 및 국경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에서 세관 명칭을 국경 관리와 연관된 명칭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논의에 앞서 사회 안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양천수(2015)에서는 안전의 개념을 각종 범죄나 재난 등의 법익 침해에서 자유로운 상태, 더 나아가 현재의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미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까지를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안전이 미래에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즉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천수(2015)에서는 이런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안전을 위해 자유가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문무(2004)에서는 올리히 벡(Ulrich Beck)의 세계위험사회론을 언급하고 있다. 벡(Beck)은 시대별로 위험이 존재하였지만, 현대 사회를 위험의 성격이 변화한 새로운 위험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기술공학적 지식에 종속되어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는 무감각해짐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전에는 빈곤, 질병 등의 초기 산업사회적 위험에서 현재는 산업적 과잉생산에 기반을 두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하면, 현재 사회는 산업적 과잉생산 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적절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자유가 희생되는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과도한 안전관리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회 안전에는 국민 건강, 보건, 그리고 환경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이에 맞춰보면, 국민 건강, 보건, 환경 등의 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자유가 희생되는 과도한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통관 과정에서 사회 안전과 국경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혹은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에서는 국제법규 의무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 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 및 고시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서는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이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에서는 「대외무역법」 이 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고시하고 있다. 개별 소관 부처에서 통제제도를 제정하면, 이 중 일부 통제제도를 산업통상부에서 통합해서 공고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품 및 그 밖의 다른 통제제도에 따른 통관 절차는 관세청에서 진행한다. 개별 부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통제제도를 제정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통제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통합하는 산업통상부도 개별 부처의 모든 통제제도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소관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부처의 통제제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통제제도를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관세청의 입장도 모든 품목에 대해 세관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관행정에도 어려움이 많다. 결과적으로 개별 부처별로 통제제도가 운영되고, 일부 통제제도가 산업통상부를 통해 통합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통제제도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관세청도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입 통제제도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건강, 보건, 환경 등의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의 수입 관련 통제제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현실에서, 핵심 수입 통제제도인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통합공고」 적용 대상 품목 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개별적인 수입 통제제도를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개별 수입 통제제도를 모두 모아 전체적인 수입 통제제도를 살펴본 연구가 찾기 어렵다. 그리고 수입품 안정성 검사와 근래 들어 세관에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협업감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협업감사는 세관 직원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개별 부처의 직원들이 함께 수입 통관과정에서 수입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더 발전할 분야로 생각된다.

수출입 통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재영(2020), 박지현(2017), 장동식(2018) 등이 있다. 이재영(2020)은 한일 간 갈등으로 이어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무역자유화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출통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상대국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GATT 제21조에 의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국가안보 등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통제의 남용으로 인해 자유로운 무역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현(2017)은 「원자력안전법」에서의 ‘국제규제물자’와 「대외무역법」에서의 ‘전략물자’ 개념이 서로 달라 용어 통일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핵 관련 기술 등이 발전

되면서 핵물질, 장비, 기술 등을 수출하는 데 적용되는 법령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장동식(2018)은 한국, 미국,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식품안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 도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 중국 간 3국의 안전관리제도 조화방안으로 수출국 제도 또는 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해외공급자검정프로그램(FSVP)이나 자발적 적격수입자프로그램(VQIP) 등 제3자를 통한 검사 제도를 바탕으로 TBT 협정의 제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적·지역적 적합판정절차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국 정부의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수출입 관련 통제 제도를 조사해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수입 통제제도와 협업 관련 내용들을 조사한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 II. 국내 수출입 통제제도

---

국내에서 수출 및 수입을 일정 규제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수출입 통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는 우리도 운용하고 있다.

### 1. 수출입 승인 및 요건 확인

수출입을 제한 및 금지하거나, 요건 등을 구비하는 규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와 제12조(통합 공고)에 수출입 제한 및 금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은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렇게 규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3개의 고시가 운영되고 있다.<sup>2)</sup>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수출입 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의 위임을 받아 국제법규 의무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이행의 목적을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위임을 받아 「통합공고」도 고시하고 있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규정하는 고시이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있다.

---

2) 씨엘 HS, <https://www.clhs.co.kr/Y2021/iolaw.asp>, 검색일자: 2021. 1. 12.

## 가. 「대외무역법」 수출입의 제한(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는 우리나라의 무역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법규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1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법규 의무 이행, 생물자원보호, 국방상 물자 수급, 과학발전 등의 6가지 사유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허가의 승인기간은 1년이고, 이를 연장할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표 II-1〉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제8항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 검색일자: 2021. 1. 13.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이다.<sup>3)</sup> 「수출입공고」 고시에는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과 관련되어 수출입이 제한 및 금지되어 있는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수출입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상에 수출 및 수입 물품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통합공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수입제한

「수출입공고」 제6조에 의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HS코드 10자리 기준 116개가 있으며, 116개 품목 모두 항공기 및 부분품과 관련된 물품으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2〉 「수출입공고」 제6조(수입제한품목)의 주요 품목

HS코드	품목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 중 항공기용의 것
7007.11.1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두께 8mm 이하)
8411.11.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 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802.60.1010	인공위성
9032.10.102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수입승인은 항공기인지 부분품인지에 따라 절차와 제출 서류가 상이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표 11-3〉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수입승인 절차

구분	구매항공기(신규 및 중고)	부분품
절차	항공기 구매도입 수입신청 ↓ 항공기 수입 예비심사(협회 수입심의회) ↓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 수입신고 ↓ 항공기 도입	부분품 수입승인 신청 ↓ 항공기 수입 본심사(협회) ↓ 수입신고 ↓ 부분품 도입
제출서류	- 예비심사: 신청업체 공문, 도입사유서, 구매계약서, 품목 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수출감항 및 형식 증명서 - 본심사: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사유서, 수입계약서	- 본심사: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사유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	1일 이내	15일 이내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http://aerospace.or.kr/m/mn02/mn02\\_03.php](http://aerospace.or.kr/m/mn02/mn02_03.php), 검색일자: 2021. 1. 13.

## 2) 수출금지 및 제한

「수출입공고」 제4조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고래고기, 천연석, 개의 생모피 3개 품목이며,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는 11개 품목이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표 11-4〉 「수출입공고」 제4조 수출 금지 품목

품목	HS코드
고래고기	0208.40, 0210.92
자연석	2516.11, 2516.12, 2516.20
개의 생모피	4301.80, 4301.90, 4302.19, 4302.20, 4302.30, 4303.9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검색일자: 2021. 2. 25.

또 「수출입공고」 제5조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은 HS코드 6자리 기준 177개 인데, 이 중 천연모래, 자갈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철강 관련 물품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 수출제한 품목 중 천연모래는 규산분(SiO<sub>2</sub>)이 90% 이하인 것에 한해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고, 자갈 등도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철강제품의 수출은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승인을 위탁하고 있다.

〈표 II-5〉 「수출입공고」 제5조(수출제한품목)의 주요 품목

HS코드	품목
2505.10 2505.90	천연모래 (규산분(SiO <sub>2</sub> )이 90% 이하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517.10 2517.41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대리석의 것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7207.11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중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
7210.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
7216.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 중 유(U)형강, 아이(I)형강, 에이치(H)형강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검색일자: 2021. 2. 25.

#### 나. 「대외무역법」 수출입 요건 확인(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에서는 수출 및 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해당 수출 및 수입요령이 공고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수출 및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통합공고」에 고시해야 한다.

〈표 II-6〉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p><b>제12조(통합 공고)</b>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 검색일자: 2021. 1. 13.

즉,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해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한 고시이다.<sup>4)</sup>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표 II-7〉 「통합공고」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감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감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요건확인기관을 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 본다.
5.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해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해당 소관 부처에서 수출입요령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을 원할 때에는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혼용여부, 기존 무역관행과의 배치 여부 등에 대해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물품 및 수출입요령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규제 대상물품의 범주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여부,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여 수출입요령을 정해야 한다.

〈표 II-8〉 「통합공고」 제3조(적용 법령등)

**제3조(적용 법령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약사법
- ⋮
6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표 II-8〉의 계속

- ②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 "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 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
  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3. 규제 대상물품의 범주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
  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5. 기타 무역정책 기초의 일치여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현재 「통합공고」 고시에서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64개이다.

〈표 II-9〉 「통합공고」 제3조에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법령

「가족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종자산업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주세법」
「건설기계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계량에관한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생용품 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소음·진동관리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축산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표 II-9〉의 계속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종자산업법」
「농약관리법」	「수산업법」	「의료기기법」	「폐기물 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식물방역법」	「자동차관리법」	「하수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장품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약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비료관리법」	「양곡관리법」	「전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4.

그리고 「통합공고」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의 요건확인 품목으로 계기되지 않았더라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료물질, 통관제한 품목, 보호문화재 등 별도규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별도규정 품목)에 따라 품목별 별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별도규정 품목에는 총 29개 품목이 규정되어 있다.

〈표 II-10〉 「통합공고」 제8조의 별도규정 품목

건강기능식품	방산물자 등	위생용품	중점관리물질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문화재	유기식품 등	축산물류
농약 또는 원제	수입금지물건 및 수산생물 검역물품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통관제한 품목
대마	식물검역대상물품	이식용 수산생물 검역물품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식품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 화학물질

〈표 II-10〉의 계속

건강기능식품	방산물자 등	위생용품	중점관리물질
등록대상 화학물질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잔류성오염물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한·금지물질의 수입 허가 또는 수출승인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중국·베트남·유럽연합 및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4.

한편,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 및 [별표 2]에는 관련법령 및 품목별로 수입요령이 명시되어 있는데, HS 10자리 기준으로 8,123개가 규정되어 있다. 전체 HS 10자리 총 1만 2,242개의 66.4%에 해당한다.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수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724개 품목이 해당된다.

### 1) 품목별 수입요령

「통합공고」 제4조에서는 관련법령 및 품목별로 수입요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HS코드 10자리 기준으로 8,123개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과 품목에 따라 수입요령이 상이하다. 「통합공고」 고시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 및 제8조(별도규정 품목)의 요건확인 품목으로 계기되지 않았거나, 「수출입공고」 등에서 요건 확인 관련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단일 품목에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요건 모두 요건 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표 II-11〉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입요령

관련법령	품명	수입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육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꿀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역·품목 및 위생조건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삼겹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확인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물량만 수입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요소수지	자동차용 촉매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제조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검사 받은 후 그 합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수입 가능
	모터사이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

〈표 II-11〉의 계속

관련법령	품명	수입요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양귀비씨	학술연구자용, 공무상 필요용을 제외하고 수입 불가
	페닐아세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수입 가능
	메프로바메이트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수입 가능
「방위사업법」	무연화약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관총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약사법」	인슐린과 그 염	원료의약품은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 시마다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
「원자력안전법」	엑스선 발생기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 부분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백열램프	정격전압이 교류 30V 초과, 직류 42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액정모니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 기준 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
	공기조절기(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전파법」	영상전신기기(전화기 등)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
「주세법」	붉은 포도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 등을 받아야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완전자동 산탄총	군용 이외의 것은 경찰청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화장품법」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은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li> <li>• 한편,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li> </ul>
「화학물질관리법」	수산화염화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
	트리부틸틴 화합물	수입할 수 없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은 「통합공시」의 수출입요령 대상품목에 계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각 품목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II-12〉 「통합공고」 제8조(별도규정 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입요령

구분	수입요령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류	썩었거나 상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등은 수입할 수 없음
건강기능식품	썩었거나 상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등은 수입할 수 없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sup>1)</sup>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을 신고하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주: 1) 세탁세제, 방향 및 탈취제, 자동차 워셔액, 미용 접촉제, 살균제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 13.

## 2) 품목별 수출요령

「통합공고」 제4조에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724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요령도 규정되어 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은 「통합공고」의 수출요령 대상 품목에 계기되지 않았더라도 각 품목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II-13〉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의 주요 품목별 수출요령

관련법령	품명	수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중 다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돼지고기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수출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출할 수 있음

〈표 II-13〉의 계속

관련법령	품명	수출요령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아세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놀에페드린과 그 염	
	과망간산칼륨	
「방위사업법」	화약, 탄약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헬리콥터, 비행기와 그밖의 항공기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염화칼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프로판, 부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을 한 자 또는 석유수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스탬프를 압인한 지,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 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 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 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공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	철강으로 만든 용기 (압축용, 액화가스용으로 한정)	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해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로의 부분품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표 II-13〉의 계속

관련법령	품명	수출요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석면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청석면(Crocidolite)
「자동차관리법」	10인이상 수송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주세법」	맥주,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주류 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주류중개업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총구장전화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군용 이외의 것
	리볼버 또는 피스톨의 것	군용이외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통합공고 별표 14의3(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계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폐지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에틸디에탄올아민	통합공고 별표 13(특정화학물질)에 계기된 품목 중 3중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 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해야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2. 25.

## 다. 「관세법」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법」 제226조에는 수출입 물품이 법령에 따라 수출입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세관장이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14〉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21. 1. 1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등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해당 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통합공고」와 비교하면, 「통합공고」에 제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6)</sup>

### 1)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서는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범위와 구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등 40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물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 14.

6) 관세청,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2017.

〈표 II-1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확인물품 및 확인사항)의 대상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비료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전파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종자산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화장품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식물방역법」	「의료기기법」	「화학물질관리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 19.

〈표 II-16〉 세관장확인대상 주요 수입물품 및 구비요건

관련법령	품명	수입요령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제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규정 해당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안전인증대상 물품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대상 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표 II-16〉의 계속

관련법령	품명	수입요령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제한물질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유독물질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원자력안전법」	핵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
「화장품법」	법 규정 해당 물품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 19.

## 2) 세관장 확인 수출물품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서는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범위와 구비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문화재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등 14개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물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표 II-17〉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및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 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표 II-17〉의 계속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포함) (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출허가서</li> <li>• 〈삭제〉</li> </ul>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li> </ul>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삭제)	-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3. 4)

## 라.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비교

### 1) 적용 법령 비교

「통합공고」 제3조(적용법령 등)는 물품별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계기하고 있는데,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등 64개의 법령이 있다. 한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확인 고시」)의 [별표 2]에는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과 대상법령, 구비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위사업법」, 「식물방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40개의 법령이 해당된다.

두 고시에 모두 계기된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계량에 관한 법률」,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먹는물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35개가 있다. 「통합공고」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29개가 있으며, 「세관장 확인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외국환거래법」 등 5개가 있다.

〈표 II-18〉 「통합공고」 제3조와 「세관장 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구분	전체 계기 법령	해당 고시에만 계기된 법령	두 고시에 모두 계기된 법령
「통합공고」 제3조	64개	29개	35개
「세관장 확인 고시」	40개	5개	35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2.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통합공고」에는 제3조(적용법령) 외에 [별표 2]에도 개별 물품별 수입요령과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 고시」에서 계기하고 있는 법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9〉 「통합공고」 [별표 2]와 「세관장 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구분	전체 계기 법령	해당 고시에만 계기된 법령	두 고시에 모두 계기된 법령
「통합공고」 [별표 2]	58개	24개	34개
「세관장 확인 고시」	40개	6개	34개

주: 「통합공고」 [별표 2]에는 CCAMLR협약, CCSBT협약, ICCAT협약, IWC협약 등이 관련법령으로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2.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적용 물품 비교

「통합공고」 제4조(대상품목) 및 [별표 2]에는 관련법령 및 품목별로 수입요령이 명시되어 있는데, HS 10자리 기준으로 8,123개가 규정되어 있다. 전체 HS 10자리 총 1만 2,242개의 66.4%에 해당한다.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세관장 확인 고시」에는 구비요건이 HS별로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관장확인사항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HS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HS 10자리 기준으로 4,931개이다. 이는 전체 HS 10자리 기준으로 40.3%에 해당한다.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물품은 4,648개이며, 「통합공고」에서만 수입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3,496개, 「세관장 확인 고시」에서만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은 283개이다.

〈표 11-20〉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대상 물품

(단위: 개, %)

구분	전체 대상 물품	해당 고시에서만 규제하는 물품	두 고시 모두에서 규제하는 물품
「통합공고」	8,123	3,496	4,648
	(66.4)	(28.6)	(38.0)
「세관장 확인 고시」	4,931	283	4,648
	(40.3)	(2.3)	(38.0)

주: 1) 「세관장 확인 고시」 물품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관장확인사항 페이지의 관세품목으로 확인

2) 2021년 총 HS 10자리 세번수인 12,242개 대비 비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hsinfosrch/openULS0205001Q.do?opnMod=P&hsSgn=&imexTpcd=>, 검색일자: 2021.12.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의 관계

관세청의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통합공고」에 제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해 「세관장 확인 고시」로 지정·운영한다. 그런데 「세관장 확인 고시」는 「통합공고」에 제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제기된 법률에 대해서도 지정·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즉, 「세관장 확인 고시」는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sup>7)</sup>

7) 관세청,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2017, pp. 89~90.

따라서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에 모두 적용되는 물품은 두 고시의 내용을 각각 따라야 한다. 한편, 「통합공고」에는 수출입 요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세관장 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지만, 「통합공고」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반대로 「통합공고」에는 수출입요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세관장 확인 고시」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HS 0106.13.0000)은 「통합공고」의 수출입요령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수입 검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관장 확인 고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21〉 「세관장 확인 고시」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주: 「세관장 확인 고시」 [별표 2]의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일부 내용 발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비지정고시>, 검색일자: 2021. 12. 13.

## 마. 「통합공고」 품목 수 변천

### 1) 「통합공고」 품목 수 변천

「통합공고」는 2008년 3월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40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일부인 28개의 개정 내용을 통해 「통합공고」 대상 품목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4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직전에 비해 품목 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국제적으로 HS코드는 5년마다 개정된다. 국제적인 HS코드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도 변경되어야 한다. HS코드가 변경된 2012년과 2017년을 보면,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가 각각 314개와 26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규제 대상 품목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HS코드 자체가 세분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2012년과 2017년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는 8,123개로 직전 2020년 7월 27일 시행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 8,011개보다 112개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통계통합 품목 분류표상의 HS 10자리는 1만 2,243개(2012년 기준)에서 1만 2,232개(2017년) 정도이다. 전체 품목 숫자는 1만 2,200여개가 좀 넘는 수준으로 변화가 없지만,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2008년에는 6,226개에서 2021년에는 8,123개로 증가하였다.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이 HS 10자리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전체 통제대상 품목이 증가하게 되었다.

〈표 II-22〉 「통합공고」 대상 품목 수 변화

(단위: 개)

시행일	개수	증감
2008. 3. 28.	6,226	-
2009. 8. 17.	6,226	0
2010. 1. 1.	6,227	1
2010. 4. 5.	7,192	965
2011. 1. 17.	7,192	0
2011. 4. 25.	7,192	0
2012. 1. 1.	7,506	314
2012. 4. 1.	7,506	0
2014. 10. 10.	7,642	136
2015. 1. 1.	7,642	0
2015. 10. 8.	7,642	0

〈표 II-22〉의 계속

(단위: 개)

시행일	개수	증감
2015. 11. 2.	7,639	-3
2016. 3. 11.	7,639	0
2016. 6. 8.	7,666	27
2017. 1. 2.	7,934	268
2017. 5. 30.	7,935	1
2017. 6. 26.	7,934	-1
2017. 9. 29.	7,935	1
2018. 4. 19.	7,939	4
2018. 6. 29.	7,969	30
2018. 10. 1.	7,972	3
2018. 11. 1.	7,998	26
2019. 3. 28.	7,993	-5
2019. 7. 15.	7,999	6
2020. 3. 18.	8,015	16
2020. 7. 27.	8,011	-4
2020. 12. 10.	8,123	112
2021. 10. 8.	8,123	0

주: 2008년 3월 이후 「통합공고」는 총 40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일부만 확인하여 품목 수 변화를 작성하였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2.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통합공고」의 변천을 조사하면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한 경우는 4번으로 대상 품목 수가 1개에서 5개까지 감소하였다.<sup>8)</sup>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한 경우도 드물지만, 감소한 품목 수도 5개 미만이라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한 경우에, 예를 들어 2020년 7월 27일의 대상 품목 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품목이 20개가 삭제되었고, 16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품목 수가 4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HS코드

8) 2020년 7월 27일에 시행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는 8,011개로 직전 2020년 3월 18일에 시행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수 8,015개보다 4개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2019년 3월에는 대상 품목 수가 직전에 비해 5개가 감소하였고, 2017년 6월 26일에는 1개, 2015년 11월 2일에는 3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을 반영한 것이고 「방위사업법」과 「통합공고」간 일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입허가품목(총포·도검·화약류 등) 수정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이 삭제되고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로 2019년 3월 28일 시행된 「통합공고」의 대상 품목 수는 7,993개로 직전에 비해 대상 품목 수가 5개 감소하였는데, 이때에는 증가한 품목 없이 5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3〉 2019년 3월 28일 「통합공고」의 삭제된 품목

HSK	품목명	대상법령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출판및인쇄진흥법」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재분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출판및인쇄진흥법」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산업안전보건법」
8431.41.9000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8539.32.1090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검색일자: 2021. 12.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수입품 안전성 검사제도

### 가. 수입품 안전성 검사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sup>9)</sup>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sup>10)</sup>

9)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10)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표 II-24〉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21. 9. 10.

수입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25〉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제품안전기본법>, 검색일자: 2021. 9. 10.

「제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관세법」에서도 통관단계에서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세관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관

에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협업검사를 위해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를 위해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1-26〉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21. 9. 10.

## 나. 협업검사

### 1) 협업검사 임무

「관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협업검사를 담당하는 협업검사센터의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협업검사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를 분석하고, 협업부처에서 정한 요건확인 내용과 세관 수출입 통관내역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서류 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또 안전성 검사 관련 서류 등을 보관 관리해야 하고, 기타 안전성 검사에 관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표 II-27〉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검사(지원)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 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 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 분석
  - 나. 협업부처의 요건확인 내역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내역 비교·분석
  - 다.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분석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6. 안전성 검사관련 서류 등의 보관 관리
7.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출·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
8. 특이사항 발생 시 관세청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에게 현황보고
9. 그 밖에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검색일자: 2021. 9. 13.

그리고 협업부처의 공무원은 협업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관세청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 검사를 수행,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II-28〉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
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
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검색일자: 2021. 9. 13.

## 2) 협업검사센터의 안전성 검사

협업검사센터에서의 안전성 검사는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이 중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협업검사센터의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 등을 본 후 해당 물품이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변조 여부, 수출입요건 내역과 해당 수출입 물품의 동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협업검사센터의 분석 실시 여부, 협업부처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 여부, 기타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사한다.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 건이 심사·검사 과정에서 불법·유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품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서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협업검사센터가 없는 세관에서는 안전성 검사 사유로 선별된 신고서를 배부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이 안전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표 II-29〉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안전성 검사)

- 제15조(안전성 검사)** ①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입 신고서를 배부받은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 ② 안전성 검사는 서류심사와 물품검사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취검사, 분석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 등을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입담당직원과 협업검사센터 직원(협업부처 공무원 등 포함)이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변조 여부
  4. 수출입요건 내역과 해당 수출입 물품의 동일 여부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해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 실시 여부
  6. 협업부처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 여부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보완요구 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 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대상 신고서가 야간·휴일 등 근무시간외 또는 특정시간(16:00)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입담당직원이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사진, 관련서류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표 II-29〉의 계속

- ⑦ 협업검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 건이 심사·검사 과정에서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품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 및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관련내용을 현황보고(통보)한다.
- ⑩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다만, 수출입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성 검사 사유와 다른 검사사유가 중복되어 선별된 신고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 ⑪ 협업검사센터가 없는 세관은 안전성 검사 사유로 선별된 신고서를 배부 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이 이 고시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검색일자: 2021. 9. 13.

한편,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장비 부족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안전성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표 II-30〉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 제19조(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 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 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분석이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견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협업검사센터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관, 협업부처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검색일자: 2021. 9. 13.

### 3) 협업검사센터 운영 현황

이러한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 부산, 평택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2014년 9월 협업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인천세관에 처음 설치 및 시범 운영되었다. 이후 2015년 3월에는 인천세관 외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에 협업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2016년 1월에는 평택세관에도 협업사무소가 추가되어 4개의 협업사무소가 상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인천세관의 협업사무소는 협업검사센터로 신설되었으며, 2020년 2월에는 부산의 협업사무소가 협업검사센터로 개관되었다.<sup>11)</sup>

〈표 II-31〉 협업검사센터 설치 및 운영 경과

일자	내용
2014. 9.	인천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및 시범 운영
2015. 3.	협업업무 확대 운영(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2016. 1.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 및 협업검사 전담 조직 신설 (평택세관에 협업사무소 운영, 인천세관에 협업검사센터 신설)
2020. 2	부산의 협업사무소 → 협업검사센터 개관

자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 검색일자: 2021. 9. 13.

2020년 기준 협업검사센터의 총 검사건수는 5,495건이며, 이 중 적발건수는 1,215건으로 총 검사건수 대비 약 22.1%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적발하였다. 검사건수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년 1천건 내외의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32〉 협업검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검사건수	적발건수	적발비율
2016	2,859	899	31.4
2017	4,358	1,324	30.4
2018	3,846	951	24.7
2019	4,759	1,193	25.1
2020	5,495	1,215	22.1

자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 검색일자: 2021. 9. 13.

1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 검색일자: 2021. 9. 13.

---

## Ⅲ. 주요국의 수입품 통제 및 협업체도

---

본 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수입품 통제제도와 미국, EU, 호주의 협업체도를 살펴본다. 수입품 통제제도는 개별 국가별로 적용 품목과 해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산물, 식품, 의약품, 가전제품, 화학물질,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공고」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종합해서 제공하기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행정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모든 규제가 「통합공고」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개별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통관 단계에서의 협업체도는 미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협업검사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단일 창구(single window)제도와 관련해서 일부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였다.

### 1. 수입품 통제제도

#### 가. 미국<sup>12)</sup>

미국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상업용 수입 절차 안내서(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에는 크게 50개 제품 구분별로 수입 절차와 규제가 명시되어 있다. 안내서에서 구분해 놓은 50개 제품 구분 중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물, 방사성 물질, 가전제품, 장난감 및 아동용품, 식품 및 의약품, 화학물질, 유해물질 등이 있다.

##### 1) 농산물

치즈, 우유 및 유제품 수입은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규제를 받는다. 치즈를

---

12) CBP,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importing-united-states>, 검색일자: 2021. 7. 29.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무부가 발행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수입 할당(quotas)도 적용 받게 된다. 우유와 크림 같은 유제품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우유 수입법(Import Milk Act)에 규정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수입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I-1〉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기준

치즈, 치즈 제품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업자 - 2021년 수입 라이선스 신청자의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치즈나 치즈 제품을 최소 3번 이상 수입했고, 총 중량이 최소 57,000kg 이상이면서,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kg 이상 - 위 기간 동안 치즈나 치즈제품을 최소 8번 이상 수입했고, 총 중량이 최소 19,000kg 이상이면서,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kg 이상
그 외 낙동 제품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업자 - 2021년 수입 라이선스 신청자의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치즈 외 낙농제품을 최소 3번 이상 수입했고, 총 중량이 최소 57,000kg 이상이면서,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2,000kg 이상 - 위 기간 동안 치즈 외 낙농제품을 최소 8번 이상 수입했고, 총 중량이 최소 19,000kg 이상이면서, 각 선적 건의 순중량이 최소 450kg 이상이어야 하며, 위 기간 동안 최소 한 분기 동안 최소 2번 이상 수입되었어야 함

자료: Trade Navi,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earchNatrCd=US&searchNatrNm=%EB%A%B8%EA%B5%AD&itlNatrCd=99&searchType=TXRT\\_CD&searchKeyword=04052030](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earchNatrCd=US&searchNatrNm=%EB%A%B8%EA%B5%AD&itlNatrCd=99&searchType=TXRT_CD&searchKeyword=04052030), 검색일자: 2021. 8. 3.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은 크기, 등급, 품질 등과 관련된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 시 검역 대상이 되며, 수입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는 농무부(USDA)의 식품 안전 및 검사 인증서가 발행된다.

[그림 III-1] 농무부의 육포 수입 검역 시 위험 평가 양식

EXAMPLE HAZARD ANALYSIS <sup>10</sup>					
Beef Jerky: Ready-to-Eat, Heat-Treated, Shelf-Stable					
Column 1	Column 2	Column 3	Column 4	Column 5	Column 6
Ingredient / Process Step	Potential Hazards (introduced or controlled) at this Step <sup>11</sup>	Is the Potential Food Safety Hazard Reasonably Likely to Occur (RLTO)? (Yes or No) <sup>12</sup>	Justification / Basis for Decision in Column 3 <sup>13</sup>	If yes in Column 3 (hazard RLTO), What Control Measures Can Be Applied to Prevent, Eliminate, or Reduce the Hazard to Acceptable Levels? <sup>14</sup>	Is this Step a Critical Control Point (CCP)?
1. Beef Receiving	B: Pathogens, <i>Escherichia coli</i> O157:H7 (STEC) <sup>15</sup> , <i>Salmonella</i>	Yes	It is well documented that raw beef may be contaminated with pathogens.	Controlled at the Cooking CCP 1 process step. Written Beef Receiving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with purchase specifications that prevent hazards including the temperature of the	No

자료: USDA, <https://www.fsis.usda.gov/guidelines/2021-0004>, 검색일자: 2021. 8. 2.

## 2) 가전제품과 방사선 발생 제품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전제품에는 에너지효율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라벨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 규제를 적용받는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의류세탁기, 의류건조기, 오븐, 레인지 등이 있다.

[그림 III-2] 방사능 성능 표준 준수 여부 신고(Form FDA 2877)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b>DECLARATION FOR IMPORTED                  ELECTRONIC PRODUCTS SUBJECT TO                  RADIATION CONTROL STANDARDS</b>		Form Approved OMB No. 0910-0025 Expiration Date: August 31, 2023	
		<b>INSTRUCTIONS</b> 1. If submitting entries electronically through ACS/ABI, hold FDA-2877 in entry file. Do not submit to FDA unless requested. 2. If submitting paper entry documents, submit the following to FDA: a. 2 copies of Customs Entry Form (e.g. CF 3461, CF 3461 Alt, CF 7501, etc.) b. 1 copy of FDA 2877 c. Commercial Invoice(s) in English.	
U.S. CUSTOMS PORT OF ENTRY		ENTRY NUMBER	DATE OF ENTRY
NAME & ADDRESS OF MANUFACTURING SITE; COUNTRY OF ORIGIN		NAME & ADDRESS OF IMPORTER & ULTIMATE CONSIGNEE (if not importer)	
PRODUCT DESCRIPTION	QUANTITY (Items/Containers)	MODEL NUMBER(S) & BRAND NAME(S)	
DECLARATION: I / WE DECLARE THAT THE PRODUCTS IDENTIFIED ABOVE: <i>(Mark X applicable statements, fill in blanks, &amp; sign)</i>			
<input type="checkbox"/> <b>A. ARE NOT SUBJECT TO RADIATION PERFORMANCE STANDARDS BECAUSE THEY:</b> <input type="checkbox"/> 1. Were manufactur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ny applicable standard; Date of Manufacture: _____ <input type="checkbox"/> 2. Are excluded by the applicability clause or definition in the standard or by FDA written guidance. Specify reason for exclusion: _____ <input type="checkbox"/> 3. Are personal household goods of an individual entering the U.S. or being returned to a U.S. resident. (Limit: 3 of each product type). <input type="checkbox"/> 4. Are property of a party residing outside the U.S. and will be returned to the owner after repair or servicing. <input type="checkbox"/> 5. Are components or subassemblies to be used in manufacturing or as replacement parts (NOT APPLICABLE to diagnostic x-ray parts). <input type="checkbox"/> 6. Are prototypes intended for on going product development by the importing firm, are labeled "FOR TEST/EVALUATION ONLY," and will be exported, destroyed, or held for future testing (i.e., not distributed). (Quantities Limited - see reverse.) <input type="checkbox"/> 7. Are being reprocessed in accordance with P.L. 104-134 or other FDA guidance, are labeled "FOR EXPORT ONLY," and will not be sold, distributed, or transferred without FDA approval.			
<input type="checkbox"/> <b>B. COMPLY WITH THE PERFORMANCE STANDARDS WHICH ARE APPLICABLE AT DATE OF MANUFACTURE AND THAT A CERTIFICATION LABEL OR TAG TO THIS EFFECT IS AFFIXED TO EACH PRODUCT. COMPLIANCE DOCUMENTED IN:</b> <input type="checkbox"/> 1. Last annual report or Product/Initial report _____ ACCESSION NUMBER of Report _____ Name of MANUFACTURER OF RECORD (Filed report with FDA/CDRH) _____ <input type="checkbox"/> 2. Unknown manufacturer or report number; State reason: _____			
<input type="checkbox"/> <b>C. DO NOT COMPLY WITH PERFORMANCE STANDARDS; ARE BEING HELD UNDER A TEMPORARY IMPORT BOND; WILL NOT BE INTRODUCED INTO COMMERCE; WILL BE USED UNDER A RADIATION PROTECTION PLAN; AND WILL BE DESTROYED OR EXPORTED UNDER U.S. CUSTOMS SUPERVISION WHEN THE FOLLOWING MISSION IS COMPLETE:</b> <input type="checkbox"/> 1. Research, Investigations/Studies, or Training (attach Form FDA 766) _____ <input type="checkbox"/> 2. Trade Show/Demonstration; List dates & use restrictions: _____			
<input type="checkbox"/> <b>D. DO NOT COMPLY WITH PERFORMANCE STANDARDS; ARE HELD AND WILL REMAIN UNDER BOND; AND WILL NOT BE INTRODUCED INTO COMMERCE UNTIL NOTIFICATION IS RECEIVED FROM FDA THAT PRODUCTS HAVE BEEN BROUGHT INTO COMPLIANCE IN ACCORDANCE WITH AN FDA APPROVED PETITION. (See Form FDA 766.)</b> <input type="checkbox"/> 1. Approved Petition is attached. <input type="checkbox"/> 2. Petition Request is attached. <input type="checkbox"/> 3. Request will be submitted within 60 days.			
<b>WARNING:</b> Any person who knowingly makes a false declaration may be fined not more than \$1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pursuant to Title 18 U.S.C. 1001. Any person importing a non-compliant electronic product may also be subject to civil penalties of \$1000 per violation, up to a maximum \$300,000 for related violations pursuant to Title 21 U.S.C. 360pp.		SIGNATURE OF IMPORTER OF RECORD	
		NAME AND TITLE OF RESPONSIBLE PERSON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average 0.2 hour per response, including the time to review instructions, search existing data sources, gather and maintain the data needed and complete and review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Paperwork Reduction Act (PRA) Staff PRAStaff@fda.hhs.gov			
Do not send your completed form to the PRA Staff email address to the lef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자료: FDA, <https://www.fda.gov/media/72236/download>, 검색일자: 2021. 8. 2.

전자레인지, X선 장비, 레이저 장비, CD롬, 휴대전화 등 방사선 발생 제품은 전자 제품 방사성 규제를 받는다. 판매 및 사용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방사선 발생 제품들은 방사능 성능 표준(Radiation Performance Standard) 준수 여부를 명시하여 식품의약국(FDA) 양식 2877(Form FDA 2877)을 제출해야 하는데, FDA 양식 2877에는 제품의 방사능 표준 준수 여부 및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성능 표준 준수 및 관련 라벨 부착 여부, 방사능 성능 표준 적용 제외 해당 여부, 제외 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방사능 성능 표준 적용 제외 사유에는 해당 방사능 표준 발효일 전에 제조된 경우, 식품의약국(FDA) 지침 적용 제외 대상 여부,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소유로서 제품의 수리 또는 서비스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양식 2877에는 이 외에도 미국 수입항, 통관번호, 수입일자,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품 설명, 수량, 브랜드명, 모델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3) 화장품<sup>13), 14)</sup>

화장품 수입에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첨가제는 수입 전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업체가 인증이 필요한 색소 첨가제 샘플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면, 해당 색소 첨가제가 사양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인증하는 구조이다.

즉,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장품 제품 또는 성분의 사전 승인을 하지는 않지만,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소 첨가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색소는 FDA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로, FDA가 화장품 통관을 거절하는 것은 색소 관련 규제를 위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색소는 사용 용도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색소는 FDA로부터 인증(Batch certification)도 받아야 한다. FDA에서 인증 받은 시설·처리과정(Batch)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색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수입이 거부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라벨도 검토하여 표기된 색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13) Trade Navi,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 검색일자: 2021. 8. 4.

14) 대한화장품협회, 『미국 수출시 주의사항』, 2020. 4. 내용을 요약

한편, 식품의약국(FDA)은 시판되는 화장품에 유해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발적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sup>15)</sup> 화장품 제조 시설과 제품을 FDA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해당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으나,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화장품원료검토회위원회에 공유된다. VCRP는 법적 의무가 없는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이지만, 아마존,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망에 입점할 때 VCRP에 참여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기도 한다.

### 〈표 III-2〉 FDA 화장품 제조시설 현장 검증 사례

#### FDA, 국내 화장품·제약사 3곳에 경고… “기준 어겼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 두 곳과 제약회사 한 곳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품 제조·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FDA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000의 충북 음성군 생산 공장을 시찰한 후 생산 과정에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어겼다고 판단,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

자료: 『연합뉴스』, 「FDA, 국내 화장품·제약사 3곳에 경고…“기준 어겼다”」, 2018. 4. 29. 기사 일부 발췌

또한 FDA는 일부 판매량이 많은 제품,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현장 실사도 실시하고 있다. FDA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생산시설을 방문해 모든 관련 장비, 완제품 및 미완성 자재, 용기 및 레이블을 검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sup>16), 17)</sup> 실사는 사전통지 없이 합리적인 시간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표시 되었는지, 건강 위험 및 기타 법률 위반 등을 검증하게 된다. 2년마다 제조업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 현장 실사는 FDA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검증하기보다 판매량이 급증한 기업, 블랙리스트 기업 등을 특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실사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15) Cosmereg, <https://cosmereg.com/fda-vcrp-%ED%99%94%EC%9E%A5%ED%92%88-%EB%93%B1%EB%A1%9D/?lang=ko>, 검색일자: 2021. 8. 4.

16)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9581>, 검색일자: 2021. 8. 17.

17) FDA,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compliance-enforcement/inspection-cosmetics>, 검색일자: 2021. 8. 18.

#### 4) 식품, 의약품, 일반의약품<sup>18)</sup>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공중 보건 및 생물 테러 대비 대응법(BTA,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의 적용을 받는다. BTA의 핵심 내용은 제조업체와 배송업체가 식품을 미국 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으로 배송 전에 식품의약국(FDA)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사전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품은 관련 규정 준수 완료를 위해 보관 장소에 대기상태로 유지되거나, 파기 및 재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품, 의약품 수입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규정도 적용받는다. 해당 법은 안전하지 않거나, 제품에 결함이 있는 등의 불량품, 비위생적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법령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되거나, 폐기 및 재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의약품(OTC-Drug, Over the Counter Drug)이란,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약품을 의미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등이 일반의약품에 해당된다.

FDA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재포장, 재라벨링하는 모든 설비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TC Drug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FDA는 이렇게 등록된 OTC Drug 제품 목록을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 운영하는 DailyMed라는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회사는 의무적으로 “의약품 수록 및 등록시스템(eDRLS)”을 통해 회사 정보를 등록하고, 의약품 성분을 FDA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록 개념이며 FDA가 해당 제품을 승인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과 OTC Drug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시판되기 전에 FDA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처음 통관하는 데 전혀 문

---

18) 대한화장품협회, 『미국 수출시 주의사항』, 2020. 4. 내용을 요약

제가 없다가 몇 년 후 통관 역류를 경험하거나 FDA로부터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통지를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FDA는 화장품 제조시설 실사와 유사하게 OTC Drug 제조시설도 실사를 하고 있다. 실사 이후 FDA가 지적 사항을 전달하는데,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시정 계획을 FDA에 제출해야 한다. FDA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받은 후 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수입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FDA는 시정 계획을 제출받은 후 실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 5) 독성물질<sup>19)</sup>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미국의 기존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경우 90일 이전에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물질 목록에는 8만 3,976개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기존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신규물질로 간주한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환경보호청(EPA)에 사전제조(PMN, Premanufacture Notice)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물질의 특성, 부반응물,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용도, 환경적 배출, 폐기 방법 및 인체 노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자연에서 생성된 물질, 우연한 반응에 의한 생성물, 불순물, 부반응물, 비분리 중간체, 완제품의 제조 중에 생성된 물질 등은 사전제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는 화학물질 종류와 그에 따른 규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20)</sup> TSCA Section5(제조(수입) 개시신고) 규정 적용 품목에 따르면, 리튬 니켈 산화물(LiNiO<sub>2</sub>), 칼륨 티타늄 산화물(K<sub>2</sub>Ti<sub>6</sub>O<sub>13</sub>), 리튬염(1:1:1)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가 면제되는 품목에는 키틴(Chitin),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칼륨염(potassium salt) 등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유통량이 2만 5천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는 4년마다 환경보호청(EPA)에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보고해야 한다.

19)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https://www.compass.or.kr/known.do>, 검색일자: 2021. 8. 3.

20) EPA,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download>, 검색일자: 2021. 8. 3.

관세청(CBP)은 TSCA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물질, 혼합물의 미국 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요건 확인 후 Positive 또는 Negative Statement 중 하나를 송장에 명시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는데 다만, 완제품의 일부인 화학물질과 담배는 관세청의 수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나. EU

### 1) 식품<sup>21)</sup>

EU는 EC NO 178/2002에서 식품 수입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원칙 미준수 시 EU내 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다. 일반원칙은 EU 내 수입, 가공, 유통되는 식품, 사료, 식품 및 사료 생산에 관련된 동물에 적용되며, 식품안전에 관한 일반원칙과 같은 기본의무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관한 추적관리, 식품 수입 및 가공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 등이 일반원칙에 명시되어 있다.

〈표 III-3〉 EU 식품 등의 수입 및 유통에 관한 일반원칙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음</li> <li>- 식품의 일부가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식품의 전체가 위배된 것으로 간주</li> <li>-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음</li> </ul> </li> <li>○ 동물용 사료에 관한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및 사람의 건강에 부작용 초래 및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료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음</li> <li>- 사료의 일부가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사료 전체가 위배된 것으로 간주</li> <li>- 사료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음</li> </ul> </li> </ul>
추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사료를 비롯한 식품 생산에 관련된 동물과 그 외 식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반드시 추적관리가 가능해야 함</li> <li>-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에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li> <li>- 식품이 공급된 제3의 업체를 기록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li> <li>- 관리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유관기관에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li> </ul>
관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수입, 가공하는 식품이 EU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함</li> <li>- 또한 이미 판매된 제품인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함</li> </ul>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4#nohref>, 검색일자: 2021. 8. 5.

21)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4#nohref>, 검색일자: 2021. 8. 4.

## 2) 전기전자제품<sup>22)</sup>

EU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시행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EU 내에서 전지전자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사람은 EU 자가적합선언서를 작성하고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Communaut' Europeen의 약자로 유럽공동체를 의미하며, 해당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착 가능하다.<sup>23)</sup> 지침 적용 대상 물품 및 적용 예외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적용 대상

구분	제품군
적용 대상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동구,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그 외 기타 전지전자제품
적용 제외	군사 및 보안용 장비, 우주용 장비, 특수 설계품, 대형 산업 설비, 고정형 대형장치, 수송용 기기, 비도로용 이동기기, 이식 의료장비, 태양광 패널, R&D용 장비

자료: 한국환경공단, 「EU 전기·전자제품 수출 지원 위한 RoHS II(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개정 분석보고서 발간, 2013. 4. 26.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에 부합하는 제품만 수입해야 하고, 생산자가 제공한 자가적합성선언서 및 기술문서에 대해 보증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10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에 따라 EU내 유통되는 전지전자제품은 다음의 사용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III-5〉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물질명	최대 허용 함유량(ppm)
카드뮴(Cadmium)	100
납(Lead)	1,000

22)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5.

23) 벤처경영연구소, <http://www.venturevalley.co.kr/inzung/ISO/ce.htm>, 검색일자: 2021. 8. 5.

〈표 III-5〉의 계속

물질명	최대 허용 함유량(ppm)
수은(Mercury)	1,000
6가크롬(Hexavalent chromium)	1,000
폴리브롬화 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s)	1,000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1,00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1,000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halate)	1,000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1,000
디소부틸프탈레이트(Diisobutyl phthalate)	1,000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5.

### 3) 화학물질<sup>24)</sup>

EU는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sup>25)</sup> 화학물질 등록은 연 1톤 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회원국 내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중합체<sup>26)</sup>를 수입하는 사람은 중합체가 전체 중량의 2% 이상의 단량체<sup>27)</sup>로 구성되고 1톤 이상 수입되는 경우 단량체 및 기타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의 총합이 연 1톤 이상이고 정상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용도인 경우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자의 신분 및 연락처, 화학물질의 정보·사용용도, 안전사용 안내서, 라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4)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5.

25)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https://compass.or.kr/reach.do>, 검색일자: 2021. 8. 5.

26) 단량체가 되풀이해서 연결된 물질로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등이 있음

27) 중합체의 출발 물질로서 에틸렌, 스티렌 등이 있음

[그림 III-3] EU 화학물질 등록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registration form for EU chemicals, organized into four main sections:

- Substance identity:** Includes fields for Substance name, CAS number, EC / List number, and Other Numerical Identifiers with a 'Type' button.
- Administrative data:** Contains dropdown menus for Registration type, Registration status, and Country in which registered. It also features date pickers for First published date and Last update date, a radio button for Submission type (Individual or Joint), and text input fields for Registrant / supplier name, Registration number, and Registrant address.
- Substance data:** Includes dropdown menus for Tonnage band, PBT assessment outcome, and Substance has nanoform. It also has a slider for Select total tonnage band range (0 to Infinite) and a dropdown for CSA performed.
- Uses and exposure:** Features a 'Life cycle' section with checkboxes for Consumer Uses, Article service life, Widespread uses by professional workers, Formulation or re-packing, Uses at industrial sites, and Manufacture. A 'Category' section has buttons for Product Category, Sector of Use, Process Category, Environmental Release Category, and Article Category. A 'Search operator' dropdown is set to 'AND'.

자료: 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검색일자: 2021. 8. 5.

## 다. 일본

### 1) 식품 등 수입신고<sup>28)</sup>

성분 규격, 표시 기준,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은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용,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은 수입신고 대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의 경우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 등 수입신고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 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초

<sup>28)</sup>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9.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확인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 적합성, 첨가물의 사용 기준 적절성, 유독 유해물질 포함 여부,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던 제조자 여부,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검역 이후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2) 의약품<sup>29)</sup>

해외 제조업자가 일본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해야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일본 내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타 신청 업무 등록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조판매란,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 임대, 수여 등을 하는 것으로 제조소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자를 의미하며, 제조판매업은 총괄제조판매책임자의 지정이 이루어졌는지, 품질관리방법 및 안전관리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한 후 허가된다. 또한 제조판매업자는 통관 시 세관에 사업허가증, 수입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 허가, 외국 제조업체 인정,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성 조사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일본 내에서 포장, 표시,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을 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사업자코드를 발급 받은 뒤 제조업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에서는 새로운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응용 의약품 등의 위험이 높은 제조소(해외 포함)에 대해 그 제조 설비 및 제조 관리방법이 의약품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기준인 GMP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 3) 소비생활용품제품의 PSC마크제도<sup>30)</sup>

소비생활용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제품에 대

29)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c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9.

30)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c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9.

해 기술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기술 기준 충족 시 PSC마크(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에는 자기 확인이 요구되는 특정 제품과 제3자 검사가 필수인 특별 특정 제품이 있다.

먼저 특별 특정 제품에는 예를 들어, 유아용 침대, 욕조용 온수 순환기, 라이터 등이 있다. 유아용 침대는 가정에서 출생 후 24개월 이내 유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에 한한다. 욕조용 온수순환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물의 흡입구와 분출구가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라이터는 연료용기와 구조상 일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가정용에 한정된다.

특정 제품에는 압력 냄비 및 밥솥, 승차용 헬멧, 등산용 밧줄 등이 있다. 승차용 헬멧은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승차용의 것으로 한정된다. 또 등산용 밧줄은 신체 확보용의 것만 해당된다. 이 밖에, 석유 온수기, 석유 보일러, 석유 스토브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있다.

소비생활용 제품 중 유통단계에서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된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PSC 마크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4) 수입 금지 품목<sup>31)</sup>

일본 관세법에서는 수입 제한 및 수입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 및 향정신정 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아편흡연기구 등, 권총, 소총, 기관총, 대포 등, 폭발물, 화약류는 허가를 취득한 경우 수입 가능하다. 그러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 인지 또는 우편,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부정하게 만들어진 대금이나 요금의 지불용 또는 예금의 인출용 카드 등,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sup>32)</sup>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불공정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31)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cx=PG0000000554#nohref>, 검색일자: 2021. 8. 9.

32)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 2. 수입품 검사 관련 협업체도

### 가. 미국<sup>33)34)</sup>

미국 세관(CBP)은 수입품 검역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 농산물의 검역은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911테러 이후 Homeland Security Act에 의해 1,500여명의 미국 농무부(USDA)의 동물식물검역소(APHIS) 직원이 미국 세관(CBP)으로 전출되면서 2003년부터 미국 세관(CBP)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농무부(USDA)의 동물식물검역소(APHIS)가 여전히 주요 정책과 검역 지침 등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식물검역소(APHIS)와 미국 세관(CBP)의 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동식물검역 과정에서 동물식물검역소(APHIS)와 세관(CBP)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원(GAO)은 2006년에 동물식물검역소(APHIS)와 세관(CBP) 업무 협력을 위한 조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에 동식물 검역 개선 방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개발하기 위한 합동 T/F(Joint Agency Task Force, JATF)가 구성되었다. 합동 T/F는 통관 과정에서의 농산물 검역에 대한 중요도 순위 상향, 외래 식물 해충 및 동물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 농산물 관련 테러 무기 반입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III-6〉 미국 농산물 검역 합동 T/F의 주요 실행 계획

문제	실행계획
농산물 검역 관련 인력 배치 및 권한 강화	농산물 검역 전문가 양성 및 채용을 위한 전략 수립
동물식물검역소(APHIS)와 관세청(CBP)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담당자 간 회의 실시 계획 수립, 농업검역검사동반협의회 설립 등
성과 측정	승객수하물, 차량, 보행자, 국제우편, 특송에 대한 성과 평가 매트릭스 개발, 여행자 비동반 수하물 성과 평가 매트릭스에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

33) GAO, "Imported Agriculture Updated Planning and Communication Could Enhance Agency Coordination of Inspections," 2021. 6.

34)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Joint Agency Task Force - Implementation Action Plans," 2011. 3.

〈표 III-6〉의 계속

문제	실행계획
긴급 상황 대응	긴급 상황에서 동물식물검역소(APHIS)와 관세청(CBP)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계획 초안 작성
정보 관리	포괄적인 정보처리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기관 공동 작업 그룹 소집, 국제우편 데이터베이스 출시
교육 훈련	농산물 검역 운영에 대한 기관 간 지식 격차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자료: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Joint Agency Task Force Implementation Action Plans," 2011. 3. 내용을 요약 및 발췌

그러나 이러한 실행계획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2020년까지만 운영되었고,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계감사원(GAO)은 2021년 보고서에서 합동 T/F에 대한 전략 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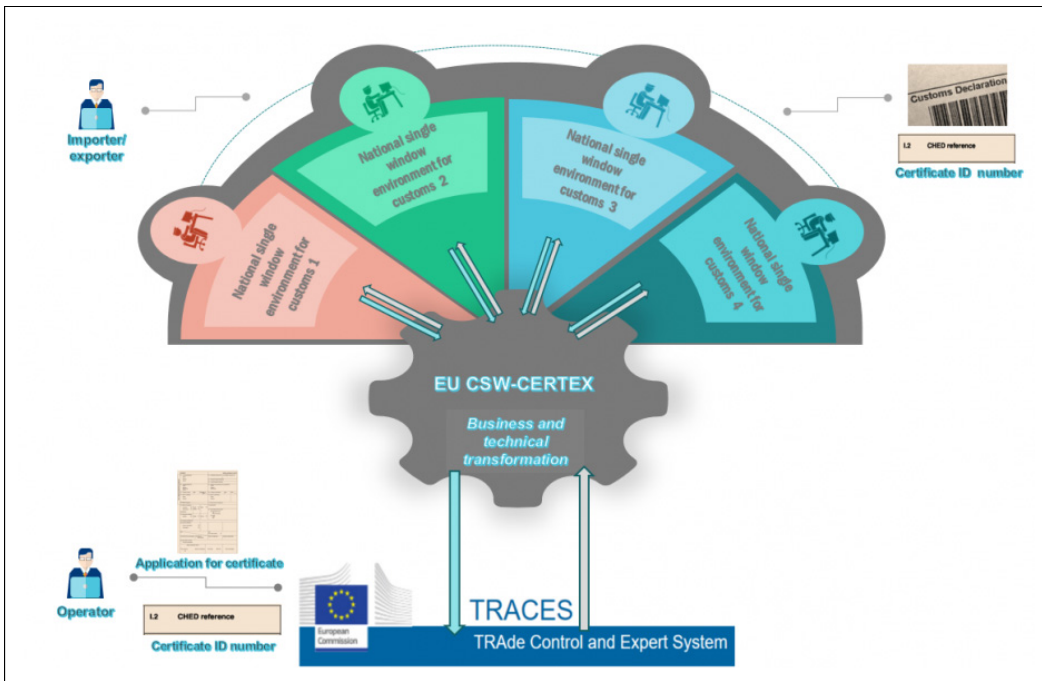
#### 나. EU<sup>35)</su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10월 28일 수입 물품 통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행정기관 간 효율적 정보 교환을 위해 단일 창구(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를 제안하였다. EU의 단일 창구 계획(initiative)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효율적인 통관 절차 구축을 통해 원활한 무역을 지원하고,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단일창구 구축을 위해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환경, 농업, 어업, 문화재, 시장 감시, 제품 안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통관 절차에서는 물품 통관을 신청하는 기업이 행정기관별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복된 절차가 반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계속되었으며, 무역이 지연되고 정부가 위험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정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단일 창구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이번 제안이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35)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 검색일자: 2021. 10.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단일 창구 구축 계획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수입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비관세(non-customs) 절차를 세관이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세관 외 관련 행정 기관 역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관의 데이터를 비관세(non-customs)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IT 플랫폼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수입, 수출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III-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단일 창구 정보 교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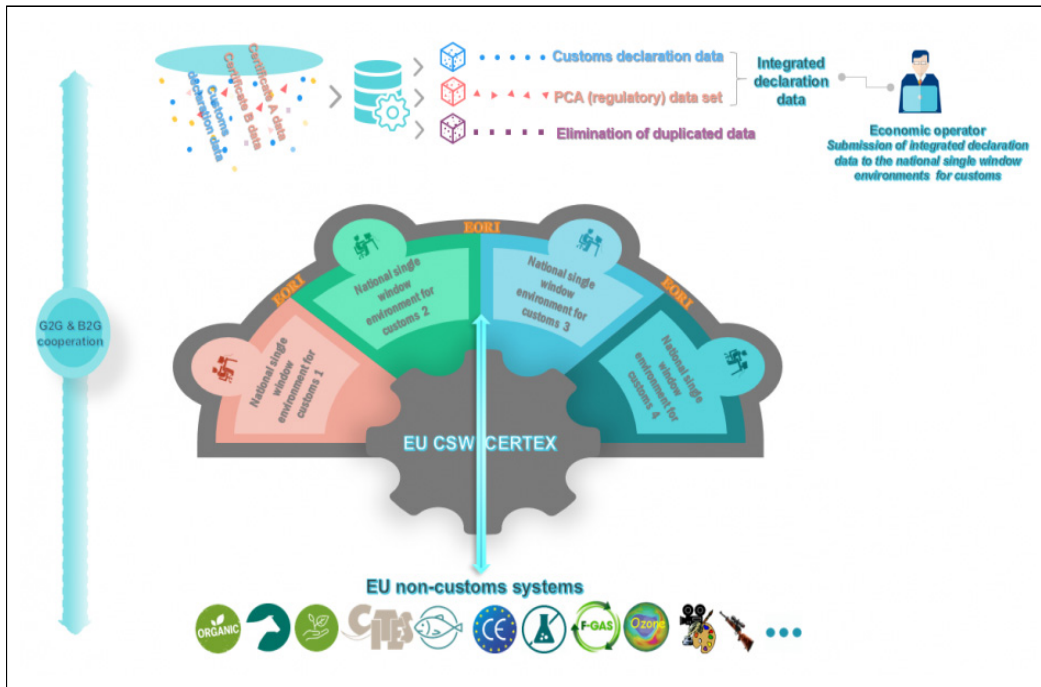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 검색일자: 2021. 10.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단일 창구 구축 계획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통관 절차 간소화이다. 이는 물품 통관에 필요한 세관 절차와 비관세 절차(relevant customs and specific EU non-customs)를 합의를 통해 통관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면서도 법적·기술적 타당성도 고려하여 기존 통관

절차 중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들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관 절차 간소화는 법적·기술적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의 단일 창구 구축 계획은 현재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림 III-5] 물품 통관 간소화 과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 검색일자: 2021. 10.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안서를 기반으로 단일 창구 구축과 관련된 입법 결의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European Union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결의안은 2021년 9월 27일에 채택되었다. 단일 창구 구축을 위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국제 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관련 부처 간 더 나은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규제는 세관과 관련 부처 간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해당 입법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의안은 통관 절차에서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자동화되어 있는 간소화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결의안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과 협력하여 EU CSW-CERTEX (EU customs single-window certificates exchange project)를 개발, 통합, 배포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일 창구 환경을 구축, 설계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대표는 단일 창구 환경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단일 창구 구축에 대한 진척 상황, EU CSW-CERTEX에 추가되어야 하는 비관세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6개월마다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6)</sup>

#### 다. 호주<sup>37)</sup>

호주의 국경관리, 사이버 안보, 이민, 연방 법집행 등을 담당하는 중앙 정책 기관인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2018년 1월 무역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계획(Inquiry into the trade system and digital economy)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계획안에는 무역을 현대화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사물인터넷·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호주 내무부는 향후 10년 동안 무역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국경 검사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자동화하면서 외주화(outsourced)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국제 무역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무부는 이러한 무역의 현대화에 있어 디지털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의 데이터 접점에서 무역과 관련된 모든 규제 정보 및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에 의해 현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 창구는 복잡한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의 위협 요인을 조기 식별하는 데도 기여할

36)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1-0279\\_EN.html#title1](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1-0279_EN.html#title1), 검색 일자: 2021. 12. 29.

37) Australian Government, "Submission: Inquiry into the trade system and digital economy," 2018. 1.

것으로 보인다.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단일 창구를 통해 조기에 통합·수집되어 정부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일 창구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 행정, 입법 등에서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내무부는 무역을 현대화하고 단일 창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무역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구체적인 예로 블록체인을 제시하였다. 무역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관련 문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작업의 오류와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전과 보안이 개선되고 국경 통관 검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2018년 제안에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무역을 현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추진 가운데 사용자 친화적인 미래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러한 미래 국제무역 시스템은 무역 단일창구로 구현될 것이라고도 밝혔으며, 2020년 6월에는 단일창구를 통해 무역 간소화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a whole of Government Single Trade Window Taskforce)가 출범되었다.<sup>38)</sup> T/F는 현재 무역시스템에서는 국경 간 상품 이동에 28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한 단순화된 디지털 모델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T/F는 수입과 수출 모두를 대상으로 단순화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발표는 없다.<sup>39)</sup>

---

38)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Growth report," 2019. 11.;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Growth Committee report: Trade transformation: Supporting Australia's expor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2020. 9.

39)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austrade.gov.au/simplified-trade-system-what-is-the-simplified-trade-system>, 검색일자: 2021. 12. 29.

### 3. 소결

본 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수입 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입품 통제 제도는 개별 국가별로 적용 품목과 해당 기준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산물, 식품, 의약품, 가전제품, 화학물질,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세관은 상업용 수입 절차 안내서(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에 크게 50여개 제품별로 수입 규제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절차 안내서에서도 개별 법령에 기초해서 규제를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공중 보건 및 생물 테러 대비 대응법(BTA,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등에 규정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세관은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것을 충족하지는 여부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공고」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행정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모든 규제가 「통합공고」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개별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세관처럼 수입신고 안내서를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HSK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라는 안내서를 통해 핵심품목 1,880개에 대해 수입요건, 수입신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고시」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들이 8천여개가 넘는 가운데 빈번하게 수입이 이루어지는 핵심품목을 선정해서 수입 통제제도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품목들의 수입신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8천여개가 넘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 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수의 품목들은 개별 규정을 참고해야만 한다.

일본과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이 있고 개별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품목별로 규제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개별 국가별로 자국 정책에 따라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의약품에 대해 일본 내에서 포장, 표시, 보관만 하더라도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재포장, 재라벨링은 사전 승인이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EU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세관처럼 주요 품목에 대한 규제를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찾기 어려웠다.

통관 단계에서의 협업제도는 미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다만, 단일 창구(single window)제도와 연계해서 세관과 함께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여럿 있었다. 물론 단일창구에는 우선적으로 수입업자 입장에서 행정기관별 제출 서류를 단일화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무역 현대화 정책을 통해 국경 검사 과정을 통합하고 자동화하면서 외주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국제 무역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경에서의 위험 요인을 조기 식별하는 데 활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 IV. 결론

---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세 행정의 역할이 과세 행정에서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회 안전에는 국민 건강, 보건, 그리고 환경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GATT/WTO 체제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 근래 들어 빠르게 확산되는 FTA로 인해 관세 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한 것도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사회 안전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 이외에 다른 승인, 허가 등의 이유로 수출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안전, 국민 보건, 환경 보호 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치이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은 WTO에서도 승인되어 수행할 수 있다.

수입품의 통제는 자국 영토로 해외 생산품이 들어와서 소비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오래 전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내법령으로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출입 허가 혹은 승인요건을 제시하면서 수출입 물품의 통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품 통제는 개별 부처별로 소관 물품에 대한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수입승인 요건들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감안할 점이 있다. 앞서 사회 안전을 정의할 때 언급하였듯이, 현재 산업적 과잉생산 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적절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다시 말해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자유가 희생되는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과도한 안전관리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건강, 보건, 그리고 환경 이슈 등을 포괄하는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자유가 희생되는 과도한 안전관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GATT/WTO 체제에서 진행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과 FTA 확산 등도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위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희생되는 자유와 위험과 공존하는 안전의 정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위험을 관리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의 다양한 수출입 통제제도를 통합해 고시하고 있다. 개별 부처가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만 규정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행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대외무역법」에서 이를 통합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관련된 제도들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별로 그리고 개별 법령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출입 통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공고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통제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대외무역법」을 운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 아니어서 통제제도 자체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물론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해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신규로 지정하기를 원할 때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혼용 여부, 기존 무역관행과의 배치 여부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여부,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여 수출입요령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입물품 통제제도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 이 규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른 소관 부처의 수입물품 통제제도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수입물품 통제제도는 소관 부처의 권한이지

40) 별도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요령 등을 정리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여러 부처의 권한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통합공고」는 대표적인 수입 규제제도이지만, 그동안 「통합공고」를 통해 규제되는 수입품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앞서도 보았듯이,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상의 HS 10자리는 1만 2,243개(2012년 기준)에서 1만 2,232개(2017년) 정도이다. 전체 품목 숫자는 1만 2,200여개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변화가 없지만,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2008년에는 6,226개에서 2021년에는 8,123개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HS 10자리 기준)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통제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공고」에서 규제되는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 증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는 않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통합공고」를 통해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8,123개로 전체 HS 10자리 총 1만 2,242개의 66.4%에 해당한다.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절반 이상의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통합공고」에서 언급하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입규제를 모두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통합공고」 이외에도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서도 수입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에 수입실적이 있는 HS 10자리 품목이 1만 1,135개 중에서 6,907개가 통합공고에서 규정된 품목들이었다. 다만, 「통합공고」에서 규정된 품목들의 HS 10자리가 현재 사용 중인 HS2017 기준이 아닌 HS2012로 고시되어 있어서 더 많은 품목이 실제 수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통합공고」의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S 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는 새롭게 HS2022가 사용되는데, 여전히 HS2012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수입요령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적용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수입요령 등이 규정된 품목 중에서도 통관 전에 그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관장 확인 고시」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HS 10자리 기준으로 4,931개로 전체 HS 10자리 기준으로 40.3%에 해당한다. 이 품목들이 모두 「통합공고」에 있는 품목은 아니다 「통합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세관장 확인 대상인 물품이 283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관장 확인 고시」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HS 10자리 기준으로 4,931개로 전체 HS 10자리 기준으로 40.3%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HS 10자리 기준 4,931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관장확인사항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 것으로, 막상 「세관장 확인 고시」에는 구비요건이 HS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비요건이 HS코드별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세관과 수입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 물품이 아닌 경우에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장 확인은 통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인데,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입업자가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 법령별로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다양한 규제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수입 승인요건을 확인하는 것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결국 통관은 세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입 승인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협업의 중요성은 앞서 보았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세관에서는 「관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2014년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평택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 부산 협업사무소가 협업검사센터로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협업검사 건수도 2016년 2,859건에서 2020년에는 5,495건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개인 소액물품인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협업검사가 이루어지면서 협업검사 건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개별 부처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정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서 협업검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협업은 세관직원과 세관 직원보다 전문성을 가진 해당 수입품의 소관 부처가 같이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협업검사센터의 역할은 확대되고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수입규제 사항들은 기업형 대규모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요즘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통한 개인들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승인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규모의 기업형 수입물품과 소규모이고 소액인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규모 기업형 수입물품의 입장에서는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과 차이를 두는 것도 차별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도 개인이 직접 해외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다양한 쇼핑물에 있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쇼핑몰형)을 통해 해외직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매대행업자와 기업형 수입업자의 동일한 수입품이 다른 수입 규제를 받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sup>41)</sup> 그리고 이런 차별로 인해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를 통해 다수의 국가들과 관세장벽 없이 혹은 낮은 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수입이 전체 우리나라 수입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수입들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무역장벽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수많은 수입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공고」에서 규제하는 수입품이 전체 수입물품의 66.4%이고, 「통합공고」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을 통해 수입 규제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세관장 확인 고시」 등에도 수입 규제제도가 다수 존재해서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들은 전체 수입물품의 70~8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수입규제들이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를 희생하면서 사회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수입물품 중 수입 규제가 없는 품목이 20~30%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수입품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재호(2021) 참고.

또한 해외직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기업형 수입품과 개인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할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춘 정책적 의도를 감안하여 사회 안전과 위험관리가 균형을 맞추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부처별로 운영하는 소관 수입규제는 몇 개 안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정부 부처로 확산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의 〈단일창구계획〉, 호주의 〈무역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계획〉 등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 안전과 위험관리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장에 의해 확인되어 통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개별 부처들과의 협업검사도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협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망과 공중보건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및 단일화된 법령(고시, 공고 포함)을 통해 신속한 통관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 관세청,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2017.
- 대한화장품협회, 『미국 수출시 주의사항』, 2020. 4.
- 박지현, 「핵안보시대의 원자력 수출·입 통제법령을 위한 국제법적 소고」,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2017.
- 『연합뉴스』, 「FDA, 국내 화장품·제약사 3곳에 경고…“기준 어겼다”」, 2018. 4. 29.
- 양천수,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5, pp. 187~216.
- 유문무, 「위험사회와 성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 『경호경비연구』, 제8호, 2004, pp. 219~256.
- 이재영,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2020, pp. 239~258.
- 장동식, 「WTO체제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 연구 - 한·미·중 3국 간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2018, pp. 299~324.
- 정재호,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 『재정포럼』 제30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pp. 38~54.
- 한국환경공단, 「EU 전기·전자제품 수출 지원 위한 RoHS II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개정 분석보고서 발간」, 2013. 4. 26.
- Australian Government, “Submission: Inquiry into the trade system and digital economy,” 2018. 1.
- \_\_\_\_\_,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Growth report,” 2019. 11.
- \_\_\_\_\_, “Australian Government response to th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Growth Committee report: Trade transformation: Supporting Australia’s

expor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2020. 9.

CBP,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11.

\_\_\_\_\_,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Joint Agency Task Force – Implementation Action Plans,” 2011. 3.

GAO, “Imported Agriculture Updated Planning and Communication Could Enhance Agency Coordination of Inspections,” 2021. 6.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hsinfosrch/openULS0205001Q.do?opnMod=P&hsSgn=&imexTpcd=>, 검색일자: 2021. 12. 9.

관세청,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901&nttSn=10053023>, 검색일자: 2012. 9. 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최종 검색일자: 2021. 9. 10.

\_\_\_\_\_,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 검색일자: 2021. 1. 13.

\_\_\_\_\_, <https://www.law.go.kr/법령/제품안전기본법>, 검색일자: 2021. 9. 10.

\_\_\_\_\_,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최종 검색일자: 2021. 12. 13.

\_\_\_\_\_, <https://www.law.go.kr/행정규칙/관세법제246조의3에따른안전성검사업무처리에관한고시>, 검색일자: 2021. 9. 13.

\_\_\_\_\_,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출입공고>, 최종 검색일자: 2021. 2. 25.

\_\_\_\_\_,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략물자수출입고시>, 최종 검색일자: 2021. 8. 18.

\_\_\_\_\_,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합공고>, 최종 검색일자: 2021. 12. 28.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https://compass.or.kr/reach.do>, 검색일자: 2021. 8. 5.

\_\_\_\_\_, <https://www.compass.or.kr/know.do>, 검색일자: 2021. 8. 3.

벤처경영연구소, <http://www.venturevalley.co.kr/inzung/ISO/ce.htm>, 검색일자: 2021. 8. 5.

씨엘 HS, <https://www.clhs.co.kr/Y2021/iolaw.asp>, 검색일자: 2021. 1. 12.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9581>, 검색일자: 2021. 8. 17.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http://kips.kr/illegal_investigation3.do), 검색일자: 2021. 9. 13.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http://aerospace.or.kr/m/mn02/mn02\\_03.php](http://aerospace.or.kr/m/mn02/mn02_03.php), 검색일자: 2021. 1. 13.

Trade Navi,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 검색일자: 2021. 8. 4.

\_\_\_\_\_,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nohref>, 최종 검색일자: 2021. 8. 9.

\_\_\_\_\_,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earchNatnCd=US&searchNatnNm=%EB%AF%B8%EA%B5%AD&ftaNatnCd=99&searchType=TXRT\\_CD&searchKeyword=04052030](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searchNatnCd=US&searchNatnNm=%EB%AF%B8%EA%B5%AD&ftaNatnCd=99&searchType=TXRT_CD&searchKeyword=04052030), 검색일자: 2021. 8. 3.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austrade.gov.au/simplified-trade-system-what-is-the-simplified-trade-system>, 검색일자: 2021. 12. 29.

CBP,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importing-united-states>, 검색일자: 2021. 7. 29.

Cosmereg, <https://cosmereg.com/fda-vcrp-%ED%99%94%EC%9E%A5%ED%92%88-%EB%93%B1%EB%A1%9D/?lang=ko>, 검색일자: 2021. 8. 4.

EPA,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download>, 검색일자: 2021. 8. 3.

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검색일자: 2021. 8. 5.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customs_en), 검색일자: 2021. 10. 21.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1-0279\\_EN.html#title1](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1-0279_EN.html#title1), 검색일자: 2021. 12. 29.

FDA,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compliance-enforcement/inspection-cos>

metics, 검색일자: 2021. 8. 18.

\_\_\_\_\_, <https://www.fda.gov/media/72236/download>, 검색일자: 2021. 8. 2.

USDA, <https://www.fsis.usda.gov/guidelines/2021-0004>, 검색일자: 2021. 8. 2.

## ■ 저자약력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 안전을 위한 수출입 통제제도 연구

---

2021년 12월 27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8,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044)865-6971

I S B N 979-11-6655-116-1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